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00호, 2026. 2. 27. 공포·시행,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방범시설 등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

다.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

라. 대테러·안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간 업무에 대해 규정

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박람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토록 하고, 박람회기금의 운용방법, 사용범위를 규정

바.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박람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수료 또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에 관한 규정

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카.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할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조성사업구역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으로 규정

파. 실시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회식장·폐회식장
 2. 응급의료시설
 3. 방범시설
 4. 상하수도시설·용수공급시설
 5. 그 밖에 산림청장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②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참가자,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

2. 관계 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업무
다. 박람회와 관련된 화재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에 관

한 업무

라. 그 밖에 테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효율적 개최·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박람회와 관련된 문화·예술 또는 체육 행사
2.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정원문화 또는 정원치유 사업

제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박람회의 준비·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장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3.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건립 또는 조성 계획
 4.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6.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1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조성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측량 및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토지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200	250	300
나.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297